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4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김성원・이종배・고동진

김선교 • 정동만 • 김정재

박성훈 · 김태호 · 박충권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'생태·경관보전지역'이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, 누구든지 생태·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됨.

하지만, 전국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생태·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사항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(안 제15조제2항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 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생태 · 경관보전지역에서	제15조(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		
의 행위제한 등) ① (생 략)	의 행위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			
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9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		
	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		
	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		
	<u>가를 받은 경우</u>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